

- ◆ 우리 구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13,013억원) 보다 5,368억원이 적습니다.
-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2,798억원)보다 276억원이 많으며,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6,922억원)보다 3,968억원 적습니다.
 -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0원)과 동일하며, 구의 1인당 채무액도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0원)과 동일하게 없습니다.
 -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24,577억원)과 비교하여 3,630억원이 적습니다.
- ◆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,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체수입이 높고, 의존재원은 낮은편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
- ◎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(<http://www.junggu.seoul.kr>, 행정정보>예산/재정>재정공시)에서 보실 수 있으며,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,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담 당 자 : 재무과 정경숙 (☎02-3396-5032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814호

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와 관련하여,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218호(2023.3.8.)로 공람·공고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이 2023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재공람·공고합니다.
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9월 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I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

가. 정비구역 지정조서 : 변경 없음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 (최초결정일)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중구 수포동 35-13번지 일원	42,641.6	-	42,641.6	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 (2016.10.6.)

나. 정비지구 지정(변경)조서

구분	지구명	위 치	시행면적(㎡)	구 분		비 고
				획 지(㎡)	정비기반시설(㎡)	
기정	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	중구 을지로3가 95-12번지 일원	2,323.9	1,916.6	407.3	-
변경			2,186.4	1,916.6	269.8	-

※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

- 변경사유 : 기반시설 부담계획 조정[토지(일부)→건축물 설치·제공]에 따른 시행면적 감소

2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

가.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2,323.9	감) 137.5	2,186.4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407.3	감) 137.5	269.8	12.3	-
	도 로	269.8	-	269.8	12.3	-
	공동분담	137.5	감) 137.5	-	-	도로 및 공원
	공공청사 (12지구 공동)	-	(증) 273.0)	(273.0)	-	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
획지(대지)		1,916.6	-	1,916.6	87.7	-

■ 변경사유 : 기반시설 부담계획 조정[토지(일부)→건축물 설치·제공]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

나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2,186.4	-	2,186.4	100.0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2,186.4	-	2,186.4	100.0	

2) 용도지구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①	방화지구	-	수표동 27-1 일대	55,151 (2,186.4)	-	-	1973.8.1 (건고 제317호)	집단

주) ()는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내 편입면적임

다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: 신설

1)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

구 분		총전토지등의 추산액		분양예정의 대자평가차액(원)(B)	비용부담액(원) (C)	분담금 추산액 (A+B+C)	분담률 (%)
		금액(원)(A)	비율(%)				
합 계		96,813,777,480	100.00	13,379,998,085	194,306,424,435	304,500,200,000	100.00
토 지 등 소 유 자	을지로3가 95-7 외 5필지	53,003,120,720	54.75	7,325,214,161	-	60,328,334,881	19.81
	을지로3가 95-19 ①	1,561,475,500	1.61	215,801,302	-	1,777,276,802	0.58
	을지로3가 95-19 ②	1,561,475,500	1.61	215,801,302	-	1,777,276,802	0.58
	입정동 268-2	1,090,000,000	1.13	150,641,761	-	1,240,641,761	0.41
	을지로3가 95-12	9,423,105,000	9.73	1,302,305,624	-	10,725,410,624	3.52
	을지로3가 95-13 외 1필지	2,572,066,000	2.66	355,468,396	-	2,927,534,396	0.96
	을지로3가 95-13 외 3필지	26,092,834,760	26.95	3,606,119,792	-	29,698,954,552	9.75
	입정동 246-1	846,300,000	0.87	116,961,580	-	963,261,580	0.32
	을지로3가 335-1	663,400,000	0.69	91,684,169	-	755,084,169	0.25
	사업시행 예정자	-	-	-	194,306,424,435	194,306,424,435	63.81

※ 상기 권리가액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자산(토지등소유자별) 및 종후자산(건축건축물)의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정(변경) 예정

2)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

구 분		권리가액(원)	분양 예정가(원/㎡)		분담금
			근린생활시설	업무시설	
합 계		304,500,200,000			
토 지 등 소 유 자	을지로3가 95-7 외 5필지	60,328,334,881	9,508,000	9,853,000	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- (시설별 분양 예정가 × 분양받은 면적)
	을지로3가 95-19 ①	1,777,276,802			
	을지로3가 95-19 ②	1,777,276,802			
	입정동 268-2	1,240,641,761			
	을지로3가 95-12	10,725,410,624			
	을지로3가 95-13 외 1필지	2,927,534,396			
	을지로3가 95-13 외 3필지	29,698,954,552			
	입정동 246-1	963,261,580			
사업시행 예정자		194,306,424,435			

※ 분양예정가는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(변경)되며,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 물건에 따라 산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확정(변경) 예정